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029호)

2026. 2.

성 평 등 가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2
2.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7
[참고자료]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1. 7.
3.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 관련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및 제2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 <u>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u> <u>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u> <u>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u> <u>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u> <u>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u> <u>다.</u>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u>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u> <u>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u> <u>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u> <u>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u> <u>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u> <u>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u> <u>하여야 한다.</u>	제2조의2(실태조사) ① ----- ----- <u>위기청소년과 은둔형</u> <u>외톨이 청소년(이하 “위기청소년</u> <u>등”이라 한다)의 위기 원인 및 실태</u> <u>를 파악하고 가족돌봄청소년의</u> <u>근로·가족돌봄·부양 실태</u> ----- ----- -----

②・③ (생략)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 위기청소년-----.

②・③ (생략)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 위기청소년-----.

② ~ ④ (생략)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 위기청소년-----.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위기청소년-----.

② (생략)

1.・2. (생략)

3. -----위기청소년-----

4. -----위기청소년-----

5. ~ 15. (생략)

16. -----위기청소년-----

③ (생략)

④ -----위기청소년-----.

⑤ ~ ⑩ (생략)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등과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 위기청소년등-----.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 위기청소년등-----.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 위기청소년등-----.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위기청소년등-----.

②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위기청소년등-----

4. -----위기청소년등-----

5. ~ 15. (현행과 같음)

16. -----위기청소년등-----

③ (현행과 같음)

④ -----위기청소년등-----.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5장 위기청소년등 지원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 --- <u>위기청소년</u> -----. ② <u>위기청소년</u> -----. ③ (생 략)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 --- <u>위기청소년등</u> -----. ② <u>위기청소년등</u>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u>위기청소년</u> 특별지원) ① -- ---- <u>위기청소년</u> -----. ② ----- . 다만, <u>위기청 소년</u> -----. ③ (생 략)	제14조(<u>위기청소년등</u> 특별지원) ① ---- <u>위기청소년등</u> -----. ② ----- . 다만, <u>위기청 소년등</u>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 <u>위기청소년</u> ----- ----- . -----.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 <u>위기청소년등</u>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¹⁾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고립·은둔 청소년을 전담하여 발견부터 상담, 학습, 치유, 가족관계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사업임²⁾.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2) 2024년에는 총 309명의 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음.
2025년도 사업지역 : <시·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시·군·구>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송파구,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시·성남시, 경북 포항시

한편 2024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³⁾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76점(10점 척도)으로 비해당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7.35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립·은둔의 이유로는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65.6%로 가장 많았고, 공부/학업 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 관련(36.8%) 순으로 응답했음. 71.7%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며, 55.8%가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필요한 도움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79.5%, 경제적 지원 77.7%,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77.4%, 진로활동 지원 75.1%, 일상생활 회복 지원 70.7%순으로 나타났음.

고립·은둔이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바, 해당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청소년 등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조사 개요>

- 연구기간 : '24.1월~10월 / * 온라인 웹조사 6.11~8.31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대상 : 전국 9~24세 청소년
 - * (사전조사) 전국 9~24세 청소년, (본조사) 사전 조사 참여자 중, 판별척도를 통해 고립 또는 은둔 청소년으로 판별된 대상자
 - * 스크리닝: ①외출빈도 및 장애여부에 따라 은둔상태 확인 ②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 관계 등에 대한 문항점수에 따라 고립상태 확인
- 방식·내용 : 온라인 링크(URL, QR 코드)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
 - * (조사기간 중 온라인 링크접속 집중 홍보) 언론 보도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고립·은둔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 지자체 고립·은둔 관련 지원기관, 카카오톡(다음) 연계배너 광고 등

이에 개정안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 관련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추가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2025.12.30. 「청소년복지 지원법」⁴⁾이 개정되어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반영됨.

4)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21278호), 2026. 7. 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16조의2(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 12. 30.] [시행일: 2026. 7. 1.]

2.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개정안은 가족돌봄청소년을 정의하고, 가족돌봄청소년의 근로·가족돌봄·부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제2조의2,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부모가 <u>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u>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u>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u> 3년마다 <u>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u>	제2조의2(실태조사) ① ----- ----- <u>위기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하 “위기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돌봄청소년의 근로·가족돌봄·부양 실태</u> -----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 ----- -----위기청소년등과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가족돌봄청소년은 부모의 사망·가출 또는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청소년
기 학업 및 자립역량과 성장에 제약이 있으므로 국가 및 사회의 지원
이 필요하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체
계는 없는 상황임.

- 전국의 232개 가족센터에서는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및 사례
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⁵⁾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가족
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2025. 3.25.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라 함)」⁶⁾이 제정되어 2027. 3.26. 시행될 예

5) [참고자료] 참조

6)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5. 3.25., 제정, 2027. 3.26.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발굴되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담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

정인바, 이 법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등을 위기아동·청년으로 규정하고,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족돌봄 아동·청년 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 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나.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2. 고립·은둔 아동·청년

가. 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나.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그 밖에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3.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아동청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지원을 하도록 하고,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급여 이용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기아동청년법」상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가족돌봄청소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복 규정에 해당하고, 「위기아동청년법」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특히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대상자 선정요건으로, ① 돌봄대상가족이 있고, ②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으며, ③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고, ④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선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봄.

<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 없음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내용상 의미는 같으나 구체적인 표현은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법체계상 용어 정의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로 중복된다는 점에서 부처간 업무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 아동·청년 등 용어 비교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개정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7호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가족돌봄청소년은 장애·질병 등의 가족부양 부담으로 청소년기 학업 및 자립역량과 성장이 제약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등의 악순환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정의, 실태조사,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 개요

- (사업목적)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 양육 역량 강화
 - (법적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손자녀 돌봄 조부모,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및 경제·사회적 위험을 겪은 긴급위기가족, 이혼위기가족 등 취약·위기 가족
 - (지원예산) ('25년) 23,203백만원 → ('26년) 24,972백만원 * 국비 30~70%
- * 운영 센터수(단위 : 개소) : ('24) 220(신설) → ('25) 227(+7) → ('26) 232(+5)

□ 추진 실적

- 1인가구, 전문상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 ('22년) 12개 가족센터 → ('23년) 36개 가족센터 → ('24년) 온가족보듬사업(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재구조화, 통합·확대 운영(220개 가족센터에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추진중)

□ 지원 내용

- ①상담, ②사례관리, ③긴급위기지원, ④교육·문화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세부 서비스 통합 운영

서비스	지원 내용
가족상담	• 정서적 안정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 가족 상담(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상담, 생애주기별 상담 등)
사례관리	• 초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후 사후관리 등 개별적·지속적 관리 서비스 지원 - 생활도움지원(보듬매니저) - 청소년(한)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 - 학습정서지원(보듬매니저) 상담기관 연계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청소년(한)부모 법률지원
긴급위기지원	• 위기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 현장대응, 심리·정서지원 - 1인가구 병원동행 - 긴급돌봄
교육문화 프로그램	• 부모·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 면접교섭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교육